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20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2019.11.29.(금)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차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질 의

질의사항

- ◆ 평가지표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 작성이 불필요하다면 확인은 체크리스트 방식, 개별 서류 확인 방식 + 등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 변

- ◆ 기관별 행정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양식 등 보고서 **제출요구를 하지 않으며,**
- ◆ 기관별 각 지표별 **계획, 실행 기록물,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 예정임

질 의

질의사항

- ◆ 심사자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 심사위원 교육 외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

답 변

- ◆ 평가개시 전 ①세부평가기준안 작성 및 ②평가원 토론회, ③사례검토 워크숍을 통하여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편향의 최소화를 기하고 있음
- ◆ 평가기간 중 실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 완료 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기준의 적용 및 결과의 적정성을 조정 예정임

질 의

질의사항

- ◆ 공공기관별 명확한 지표 적용을 설명회 시 공지할 수 없는지?
- ◆ 항목별 배점(안)의 (1), (2), (3), (4)로 나누어서, 기관평가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128개 기관을 사전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 변

- ◆ 현장에서 평가반이 각 기관의 사업계획, 계약대장, 공사계약내역서 등을 통하여 발주 건설공사, 수급업체 유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예정임.

질 의

지표내용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2.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공표 및 공유 여부

질의사항

- ◆ 경영자란 반드시 기관장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임원(상임이사)이 경영진을 대표해서 진행한 것도 해당되는지?
- ◆ 반드시 서명을 해야되는 것인지, 결의문을 함께 선포하는 것으로는 안되는지?

답 변

- ◆ 본 평가지표에서 '경영자'란 **기관의 최고경영자(대표자,기관장)**를 의미하며, **서명과 서명표시일이** 기재된 방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결의문 선포는 방침에 대한 **공표**를 실시한 하나의 방법임.

질 의

지표내용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2.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공표 및 공유 여부

질의사항

- ◆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유 방법으로 홈페이지 게시, 업무수첩 기재 등으로 인정이 되는지?
- ◆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유 시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사항도 인정되는지?

답 변

- ◆ 공유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

질 의

지표내용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2.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공표 및 공유 여부

질의사항

- ◆ 위험성평가 지침 상의 위험성평가 방침이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답 변

- ◆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이 국민과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최우선의 경영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 사항의 방침은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 안전보건경영 방침이 최상위적인 개념

질 의

지표내용

㉠ 3.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 3.1.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3.2.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위원회 운영에 대한 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결과 문서를 제시하면 되는지요?

답 변

- ◆ 회의록은 실시일정, 참여자(서명포함), 심의 및 의결, 보고 안건에 대한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질 의

지표내용

㉠ 3.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3.2.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적정성

질의사항

- ◆ 본사는 사무직만 근무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안전근로협의체는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번
평가에서 수검을 받아야 하나요?

답 변

- ◆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며, 산업안전보건법
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 본사가 대상임.
- ◆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경우
“노사협의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음.

질 의

지표내용

② 2. 안전기본계획 수립

2.2. 안전기본계획 수립·이행 절차 및 기한준수 여부

질의사항

- ◆ '20년부터 평가 대상이 확대되면 지방사무소(지사) 각각의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 소규모의 경우 20인 미만도 있음.

답 변

- ◆ 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을 받는 등 전사적인 안전관리계획 및 평가를 고려하여 **본사에 작성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 의

지표내용

ⓒ 1. 일반 작업안전 관리

1.1. 일반 작업안전 지침의 적정성

질의사항

- ◆ 기관 業 특성상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표에서 말한 일반 작업안전지침을 고객폭언 등 민원업무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로 갈음할 수 있는지?

답 변

- ◆ 기관이 소재한 장소(사무실,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과정 및 해당 작업 등에서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폭언 등 민원업무 대응 매뉴얼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질 의

지표내용

© 1. 일반 작업안전 관리

1.2. 안전관련 법규 적용사항 도출 및 현황관리 수준

질의사항

- ◆ 법적 적용사항에 대한 범위 한정
+ 필요(방대한 법적 범위)
- ◆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우리 기관의 경우 법정 정기검사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요구사항이 없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 변

- ◆ 평가착안사항에 기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기관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법령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법령에 따른 **적용사항이 도출되고 현황이 관리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임

※ 평가착안사항 1.2.

소방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관련 법령 중 해당 법령확보 및 적용사항 도출 수준**

질 의

지표내용

© 2.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2.4. 노동자 건강증진활동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질의사항

- ◆ 건강증진활동 주무부서의
+ 세부업무계획에 건강증진활동 계획이
있다면 건강증진활동 실시계획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답 변

- ◆ 주무부서의 세부업무계획에
건강증진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시행한 증거가 있다면 **실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질 의

지표내용

ⓒ 3.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3.1. 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및 계획의 적정성

질의사항

- ◆ 본사는 사무실만 있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단순 점검계획 및 결과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 받으면 되는지요?
- ◆ 공사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안전점검을 동시 진행하였는데 위험성평가 계획으로 대체가능한지?

답 변

- ◆ 기관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대상(자체대상, 법적대상 등)을 구분하고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을 지침이나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 위험성평가는 시설, 설비 또는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의 발굴 및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질 의

지표내용

© 3.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3.1. 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및 계획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시설물관리의 특성상 연간계획을
+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상 준수사항은
준수하고 있으며 수시 발생하는
점검사항은 그때마다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답 변

- ◆ 시설물에 대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특법의 안전점검 등은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계획 수립 후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외 시설물의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됨.

질 의

지표내용

ⓒ 3.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3.1. 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및 계획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우리원은 현재 본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 변

- ◆ 자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임차청사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청사 등을 관리하여야 함.

질 의

지표내용

© 3.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3.2. 시설물 점검결과 개선대책의 수립 및 이행
상태의 적정성

질의사항

◆ 시설물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상
안전점검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답 변

- ◆ **시특법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한 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면 안전점검으로 대체가 가능함.**
- ◆ 그러나, 기관내 **시특법상 제외된 건물**이 있어 자체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안전점검은 실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 의

지표내용

© 4. 위험성평가

4.1.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및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관련 지침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관련 지침의 적정성, 위험성 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의 적정성 내용과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 변

-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의거 **모든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서 재배·관리권이 있다면 수급업체로 봄
(단순 물품구매 등은 제외)

질 의

지표내용

© 4. 위험성평가

4.2. 공공기관,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및 점검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수급업체는 현장에 있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번
+ 평가에서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에 대하여 이행점검 관련 지침 및 점검 결과를 수검 받아야 하나요?
-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무조건 보완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보완요구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 변

-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5조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사업주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므로, **평가 대상임.**
-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5조에 의거 수급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하면 됨.**

질 의

지표내용

© 5. 안전보건교육

5.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질의사항

◆ 안전기본계획 내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 내용이 있는데, 안전기본계획으로 대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 공공행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본지표 평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산안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공행정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 변

◆ 안전기본계획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다면, **별도의 교육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됨**

◆ 공공행정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1항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 의

지표내용

ⓒ 5. 안전보건교육

5.3. 안전보건교육 관리의 적정성

질의사항

- ◆ 교육실시 증빙자료 중 온라인교육
+ 이수증 인정 여부?

답 변

- ◆ off-line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근거서류는 **교육일지 또는 결과서, 서명지, 사진** 등을 인정할 수 있고,
- ◆ On-line상의 이러닝 교육은 **교육 이수증으로** 같음할 수 있음.

질 의

지표내용

© 6.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 6.1.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신고·제안
·포상제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안전보건만 관련된 프로그램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 공통의 제안, 포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분야가 하나의 과제로 포함되어도 되는지?

답 변

- ◆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업무 전분야에 걸쳐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제안,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분야 관련 신고, 제안, 포상제도는 **기존에 있는 지침내 한 분야로 관리**하면 되고 안전보건분야 신고, 제안, 포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질 의

지표내용

© 7.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7.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의 적정성

질의사항

- ◆ 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어 별도의 고위험작업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연수원 건설현장 작업이 주요 고위험작업으로 판단됨.
- ◆ 만약 연수원 건설 수급업체가 별도의 작업표준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사가 별도로 주요 고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

- ◆ 고위험작업은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이 높게 평가된 작업**을 말하며,
- ◆ **발주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은 시공사에서 작성해야 할 것임.**

질 의

지표내용

© 7.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7.2.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여부 및 허가서
발행·승인 절차의 적정성

질의사항

- ◆ 공사는 사무직 환경으로 별도의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할 만한 작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현재 진행 중인 연수원 건설현장에 대하여 작업허가제 관련 규정 및 이행실적이 있는데, 이 규정으로 대체가능한지?

답 변

- ◆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시공사에서 작성해야 할 것임.**
- ◆ 연수원 현장이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을 경우** 시공사의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이 적절한지 **관리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지표내용

ⓒ 8.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8.1. 재해 등의 원인조사지침 작성여부 및 적적성

질의사항

◆ 재해조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등 KOSHA GUIDE 인용 허용 범위는??

답 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임
- ◆ 관련 기술지침 등 인용의 **허용범위는 별도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지침이 평가 대상임



질 의

지표내용

ⓒ 9. 비상시 대비 및 대응

9.1.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 작성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총무사태 등 전시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절차는 비밀문서로 자료 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답 변

- ◆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의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의 작성 여부 및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무계획 등 전시상황 대비 절차는 포함되지 않음

질 의

지표내용

© 9. 비상시 대비 및 대응

9.2.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변경관리 적정성

질의사항

- ◆ 시나리오는 훈련목적에 따라 매뉴얼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지표에서 시나리오 선정 및 변경관리를 한다는 것은 매뉴얼이 주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주가 되는 상황임

답 변

- ◆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의 상황 발생시에 기관차원의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주변환경(시설물, 취급물질 등) 변화에 따른 변경관리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질 의

지표내용

ⓒ 10.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10.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

질의사항

- ◆ 본원(임차)에서는 대국민 이용시설이 없으나, 부동산 자산에는 회의장 등이 대국민 이용시설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답 변

- ◆ 평가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인 경우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함.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주체로 봄.

질 의

지표내용

© 10.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10.3. 비상대피로·대피장소 등 비상대응 시설·
장비 관리 및 비상유도 훈련의 적정성

질의사항

- ◆ 본사가 아닌, 대국민 이용시설에 대한
+ 시설물을 점검할 시에도 ©-4[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의 세부 평가내용을
모두 확인할 것인지?

답 변

- ◆ 금년도 평가대상은 본사로서 **본사
내에 설치된 시설이 아니면
평가대상이 아님.**

질 의

지표내용

© 11.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11.2.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운영요령 안내(2019.08.13.)을 통하여
+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안내를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의
적정성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답 변

- ◆ 기관 특성에 맞는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 수립 및 내실 있는 운영이
평가대상임.
(※ 해당 문건은 참고자료임)

질 의

지표내용

ⓒ-2 1.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

1.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

질의사항

- ◆ 발주공사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우리 공단의 경우 시설물 진단 및 점검 시 비파괴검사와 같은 일부 위탁 용역이 있는데 이런 용역도 발주공사에 포함되는지?
- ◆ '18년 발주공사도 포함되는지? 대책, 지침, 평가기준 발표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도 해당되는지?

답 변

- ◆ 본 지표는 평가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로 한정함**
- ◆ 관련법 조기이행지침 통보(19.5월)시점과 평가 내용 등을 반영하여 **ⓒ-2 2.는 19.6.1 이후 설계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정함.**

질 의

지표내용

©-2 1.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

- 1.1 발주공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공사 기간 및 금액 산정 여부
- 1.2 설계 안전성 검토(DFS) 활동의 적합 여부

질의사항

-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와
+ 동일하게 50억원 이상 공사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명시 가능여부?
- ◆ 위와 같을 경우, 평가점수 반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만점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지표점수로 이관되는지?

답 변

- ◆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공사가 없는 경우 해당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 ◆ 해당 항목만으로 평가 후 이를 [발주안전보건관리] 영역(5개의 세부지표가 있음) 내에서 환산하여 평가할 예정임

질 의

지표내용

ⓒ-2 발주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질의사항

◆ 우리 公社 본사에서는 일부 건설공사에
+ 대한 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후 지방부서에 계약을
이관하여 공사 관리를 시행함

* 업무 체계 : 발주요청(지방부서) → 발주
및 계약시행(본사)→계약이관(지방부서)
이런 경우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표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 해당 계약 건과 같은 **건설 발주공사**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지표'평가
대상이 아니라, '**발주 안전보건관리**'
지표 평가 대상입니다.

질 의

지표내용

©-2 3. 시공사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평가

- 3.1. 안전확보를 위한 입찰 참여제한 제도 도입 수준
- 3.2. 안전확보를 위한 적격 시공사 선정 제도 운영 수준

질의사항

- ◆ 예금보험공사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본 지표는 발주시기에 관한 언급 없이 5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음.
+ '19년 6월 이전 착공하였고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인지?
- ◆ 조달청 위탁발주의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사항이 반영되기 어려움. 위와 같은 경우, 평가점수 반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 변

- ◆ 평가 대상년도('19)에 계약된 공사비 50억이상의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평가할 예정임.
-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

질 의

지표내용

ⓒ-2 3. 시공사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평가

- 3.1. 안전확보를 위한 입찰 참여제한 제도 도입 수준
- 3.2. 안전확보를 위한 적격 시공사 선정 제도 운영 수준

질의사항

- ◆ 발주공사 입.낙찰 규정을 자체 규정이 아닌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국가계약법령'에 적용하는 경우가 지표의 대체 가능성 여부?
 - + 우리 공단은 입.낙찰 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계약법령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전관리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답 변

- ◆ 지표에 관련된 법(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따르고 있고 평가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체 가능함.**

질 의

지표내용

ⓒ-2 5.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 5.1.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이행 수준
- 5.2.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이행 수준
-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관리 수준의 적합여부

질의사항

- ◆ 관련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내부품의 등의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답 변

- ◆ 처리기준 등 관련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내부품의 등의 형식으로 작성하면 가능함.

질 의

지표내용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질의사항

- ◆ 임대용 부동산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합자산위탁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본사와 분리)
- ◆ 수급업체는 현장에 있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이번 평가에서 수검을 받아야 하나요?

답 변

-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평가 대상임.
-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소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평가 비대상임.

질 의

지표내용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질의사항

- ◆ 발주공사 수급업체에 관한 안전관리는
+ [발주 안전보건관리] 파트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파트에서 발주공사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는지?

답 변

- ◆ 건설공사 발주인 경우 [발주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평가하고, 도급사업인 경우 [수급
업체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평가함.
따라서, 시공사에서 재도급한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질 의

지표내용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질의사항

- ◆ 수급업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 + -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수급업체인지 혹은 단순 물품 구매 및 제작·설치, 용역 서비스 제공 등의 계약까지 포함하는 모든 수급업체 의미하는지?

답 변

- ◆ 수급업체란 “도급인”으로 부터 계약을 받은 업체로서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2) 도급인 사업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받은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보수적·부수적 사업(단순청소, 경비, 조경 등)이나 장소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질 의

지표내용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질의사항

- ◆ 자회사를 두고 위탁하고 있는 부대사업이 미화, 건물유지(설비관리), 보안, 고객센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가 이 경우 본 특화지표에 해당이 되는 지 아니면 적어도 1과 2지표에 해당이 되는지?
- ◆ 도급 중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사업의 경우 "해당무" 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기관의 경우 단순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럼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답 변

- ◆ 도급사업 중 보수적·부수적 사업 (단순청소, 경비, 조경 등)은 본 지표 평가「©-3-1,2」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시설관리업무는 사고사망 발생우려가 있어 「©-3-3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항목만 평가대상임.

질 의

지표내용

©-3 1.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1.2.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참여업체
안전수준평가의 적정성

질의사항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 별
표3에 “건설공사 발주는 입찰시 재해율
등을 반영하므로 제외”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맞는지?

답 변

◆ 도급사업과 별도로 **건설공사 발주는**
입찰시 재해율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외가 맞습니다.

질 의

지표내용

©-4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2.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의 적정성

질의사항

- ◆ 제조 공장이 아닌 일반 건물의 기계·전기 설비도 LOTO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답 변

- ◆ 기계·기구·설비의 불시 가동에 의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현장 확인 시 평가위원이 종합 판단

※ LOTO :

Lock-Out Tag-Out, 안전 잠금장치-안전고리표

질 의

지표내용

④ 2.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2.3. 산업재해 발생수준 및 사망자수 감소 성과

질의사항

- ◆ 정량평가로서 관련데이터를 기관이
+ 준비해야 하는 지 아니면 별도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지?

답 변

- ◆ 평가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급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괄 산출하므로 기관에서는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음.**

질 의

지표내용

④ 2.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2.3. 산업재해 발생수준 및 사망자수 감소 성과

질의사항

- ◆ 재해율 산정시 질병이환자 또는
+ 직업질병관련(뇌심 등)으로 인한
산재승인시 재해율 포함 여부?
- ◆ '19년 사고사망자수 산정 기준은 ?
(예, 5년 이상 경과된 사고가 '19년도 산재
사망 승인 시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등)

답 변

- ◆ 재해발생수준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로 정의함**
(※ 단, 질병재해,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함)
- ◆ '19년도의 사고사망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를 말함.**
(※ 단, 질병재해,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
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
행사, 폭력행위로 발생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2. 평가관련 질의·응답

안전은 권리입니다

분야	평가 항목	담당 책임평가원
㉠안전보건 체제 (System)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강호경 차장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④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안전보건 활동 계획 (Plan)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박종선 차장
	② 안전기본계획 수립	
㉢안전보건 활동 수준 [4개영역]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이상길 차장
	① 일반 작업안전 관리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③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④ 위험성평가	
	⑤ 안전보건교육	윤영식 차장
	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⑦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⑧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⑩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⑪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분야	평가 항목	담당 책임평가원
㉢안전보건 활동 수준 [4개영역] (Activity Level)	㉢-2 [발주 안전보건관리]	성하원 차장
	①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50억 원 이상 공사)	
	②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50억 원 이상 공사)	
	③ 시공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④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및 수행	
	⑤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정효석 차장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①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② 수급업체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수준	조영배 차장
	③ 안전보건 교육 등 인프라 지원	
	㉢-4 [현장 안전보건관리]	
	①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②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③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④ 추락, 낙하, 붕괴 등 시설물 위험방지 조치	김영구 차장
	⑤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⑥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	박종선 차장
	⑦ 작업환경 관리 수준	
㉣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①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박종선 차장
	②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